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9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구청장
- 제안일 : 2019. 11. 15
- 회부일 : 2019. 11. 18. (의안번호 : 19 - 156)

2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캠프 정의,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설치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며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 신설(안 제2조제5호)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(안 제5조제3항)
- 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규정 신설(안 제12조의2)
-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 정비

4. 관계법령

-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

5. 검토보고

○ 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캠프 정의,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토록 하며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(안 제2조제5호)자원봉사캠프 정의 규정 신설
- (안 제5조제3항)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개정
- (안 제12조의2)자원봉사캠프 설치 및 지원 규정 신설하고, 법제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띄어쓰기, 용어 및 표현 등 정비하는 내용임.

○ 검토의견으로는

본 개정안은 자원봉사캠프를 신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보다 많은 주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